

이천시 경관 조례

소관부서 : 미래도시과

제정 2011·9·22 조례 제 903호
전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98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5·4 조례 제1118호
일부개정 2017·3·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5·18 조례 제1401호
일부개정 2021·8·3 조례 제17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

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범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 사업자 ·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독특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아름답고 독특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가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준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의 검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천시 경관 조례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화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하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그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

이천시 경관 조례

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범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5. 그 밖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8·5·18]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준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여 기준 충수 또는 기준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8·3>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지상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건축물
 -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
 - 3)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건축물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부터 가시권 5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의 일부가거리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다음 구분에 따른 건축물
 -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 3)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건축물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1. 위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경우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어업용 창고,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7.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8.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았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5·18]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5·18]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 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 · 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 · 조사 · 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소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8, 2021·8·3>

1.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소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 · 자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 할 수 있다.
 - 가. 제24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15·5·4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공청사의 구분란 중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18·5·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8·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경관 조례

[별표 1] 삭제 <2018·5·18>

[별표 2] 삭제 <2018·5·18>